

※기업승계M&A 관련 내용(25p.) 발췌

---

# 2026년 세제개편안

---

'26. 8. 3.

재 정 경 제 부

## □ 가업상속공제 적용 수준 및 공제방식 조정(상증법·상증령)

○ **(토지공제)**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(건축물 바닥면적의 3~7배 → 2~3배)\* 및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(1㎡당 1,000만원) 신설

\* [현 행] (상업지역) 3배, (공업지역) 4배, (도시지역 外) 7배  
[개정안] (수도권(인구감소지역 제외)) 2배, (기타) 3배

○ **(공제한도)** 피상속인의 「경영연수 × 20억원」으로 하되, 최대 공제한도를 1,000억원으로 상향

\* [현 행] 10/20/30년 이상 각각 300/400/600억원

○ **(공제방식)** 주업종(공제업종)-부업종(비공제업종)의 매출액 등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 적용

\* [현 행] 주업종이 공제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비공제 업종인 경우에도 모든 사업용자산(법인의 경우 주식가액 × 자산중 모든 사업용자산의 비중) 공제 적용

※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,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·납부유예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개편과 유사하게 업종, 요건 등 개편

\* 단,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·납부유예의 경영기간 요건은 20년 적용

## □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(조특법)

○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 사업승계의 경우에도 매도자, 매수자에게 세제지원

▪ **(매도자)** 일정 요건\*을 충족한 경우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0% 감면(한도: 경영연수 × 연 5천만원)

\* 요건: ❶(업종)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, ❷(규모) 중소·중견기업(매출액 5천억원 미만), ❸(업력) 20년 이상 경영한 자, ❹(연령·지분) 60세 이상인 최대주주

▪ **(매수자)** 일정 요건\*을 충족한 경우 5년간 소득세·법인세 10% 감면\*\* (한도: 연 5억원)

\* 요건: 매도기업(피승계기업)과 동일한 업종(대분류 기준)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·기업 또는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일 것

\*\* 사후관리: 승계받은 자산·지분 및 고용 유지, 사업 계속 등